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8. 4. 4.

사회건설위원회

1. 審 查 經 過

- 가. 제출일자 : 2008년 3월 21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08년 3월 28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08년 3월 31일) 상정의결

2. 提 案 說 明 的 要 旨 (제안설명자 : 도시환경국장 박정희)

가. 제 정 이 유

- 영등포구의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 촉진 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 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 요 내 용

-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(안 제2조부터 제6조)
 - 위원회는 위원장·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- 위 원 장 : 소관국장
 - 부위원장 : 위원 중에서 호선
 - 위 원 :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 관리자, 구 공무원, 사업시행자, 도시계획, 건축, 교통, 환경, 조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
 - 임 기 : 2년
 - 회의개최

-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-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회의개최
- 심의내용
 -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재정비 촉진 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기타 재정비 촉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: 이남식)

- 본 조례안은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
-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사업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(협의회)는 위원장·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관국장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 관리자, 구 공무원과 사업시행자, 도시계획, 건축, 교통, 환경,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,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, 그리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개최하도록 하며, 위원회에서 심의내용은 재정비촉진 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, 재정비 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, 기타 재정비 촉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審査結課 : 原案可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30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3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영등포구의 균형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『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』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정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원활한 촉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따른 필요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조정 등을 통한 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2조)

- (1)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
- (2) 촉진사업별 지역주민들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
- (3) 존치정비구역 등의 촉진계획 수립시

나.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(안 제3조)

- (1) 구 성 : 위원장·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
- (2) 위 원 장 : 소관국장
- (3) 부위원장 : 위원 중 호선
- (4) 위 원 :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, 구 공무원, 사업시행자, 관계전문가
- (5) 임 기 : 2년(연임가능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(사업협회의 구성)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08. 1. 25 ~ 2. 13) 결과 : 의견없음.

(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

1.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2.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3. 그 밖에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를 포함하되,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구 공무원
2. 사업시행자(개별법에 의한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.)
3. 도시계획, 건축, 교통, 환경, 조경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(이하 “관계전문가”라 한다.)

④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제3항제3호 관계전문가 위원중 재정비촉진계획에 참여한 위원의 임기는 재정비촉진계획 사업완료시까지 한다.

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

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,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.

⑨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4조(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2.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2.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3. 소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간사는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자료제출의 요구 등)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·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